

**대 통 령 령**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

2010년 12월 2일

국무총리 김 항 식

국무위원  
행정안전부 장관 (금융위원회 소관) 맹 형 규

●대통령령 제22509호

**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**

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(이하 “사모투자전문회사”라 한다)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(이하 “사모투자전문회사”라 한다)”를 “사모투자전문회사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제5호 단서 중 “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”를 “100분의 10(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) 이상을 본인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면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. 다만,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4호까지 및 제6호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: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(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

2. 법 제8조제2항제2호,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: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”을 “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(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)는”으로, “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”를 “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(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)는 제외하며,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그 자회사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

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본금”을 각각 “자본”으로 한다.

법 제40조제4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.

제19조제4항제6호 중 “그 금융지주회사와”를 “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등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,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

가.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과 법률자문,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(「변호사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)

나.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과 법률자문,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(「변호사법」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)

다.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(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)

별표 2의2 제5호의 구분란 중 “한도초과보유주주”를 “비금융주력자”로 한다.

**부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자회사등 편입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3항제3호,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.

**◇개정이유**

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 및 기준을 완화하고 대주주 심사 대상을 조정하며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**◇주요내용**

- 가.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 및 기준 완화(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단서 신설)
  -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인가받으려는 자로서 그의 최대주주가 정부, 한국정책금융공사, 예금보험공사 등인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성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주주 심사 대상을 축소함(안 제5조제3항제5호).
  - 1) 동일인의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와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 시 대주주 심사 대상 기준이 달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으로 지방은행이 지방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지방은행 주식 취득 시에 받지 아니하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.
  - 2)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주주 심사 대상을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에서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축소함.
- 다. 대주주 심사 대상에서 소수 지분 보유 주주를 제외함(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).
  - 1)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대주주 변경 시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소수 지분 보유 주주까지 심사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.
  - 2)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자를 대주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.

라.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보고기한의 연장(안 제6조의2제3항)

- 1)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에 대한 보고기한이 보고사유에 상관없이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보고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.
- 2)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에 대한 보고기한을 보고사유별로 구분하여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또는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함.

마. 소규모 외국법인의 자회사 등 편입절차 간소화(안 제14조제1항)

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신속하게 국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외국법인을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를 승인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함.

바. 사외이사 결격사유 추가(안 제19조제4항제8호 신설)

- 1)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반면, 실질적으로 법무법인과 유사한 법률사무소 등의 소속 변호사 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.
- 2)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등과 법률자문,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, 법무조합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,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추가함. <법제처 제공>

## 부 령

### ●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

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0년 12월 2일

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

###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”을 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제2항”을 “제11조제7항”으로, “입학금”을 “그 밖의 납부금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